

자격증 발급 가이드



사회복지사

보건복지부 장관 발급
국가자격증



준비 서류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X4센티미터) 사진 2매
- 최종학력 증명서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
-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원본)



자격 취득 절차



14과목
42학점 이수



학습자등록 및
학점인정신청



자격증 수령
(방문/등기우편)



사회복지협회
자격증 신청

STEP 1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서류 준비 - 성적증명서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

1 소개 표준교육과정 교육기관 정보 학습도움방 알림방

2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

3 온라인 증명서 발급

학습자 관련	기관 관련	법·제도 관련	MORE >
2016년도 8월(후기) 학위증 우편신청 및 방문수			2016.08.26
2016년 하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 안내			2016.08.19
제도 안내 동영상 [학점은행제 첫걸음-동영상] 준비			2016.08.18
2016년도 8월(후기) 학위신청자 학위수여요건 심			2016.08.12
2016년 8월(후기)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			2016.08.04

1 학점은행 홈페이지 접속(<https://www.cb.or.kr>)

2 로그인

3 온라인 증명서 발급 - 성적증명서 발급 (학위증명서는 최종학력 해당자만 발급)

STEP 2.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접속

한국사회복지사업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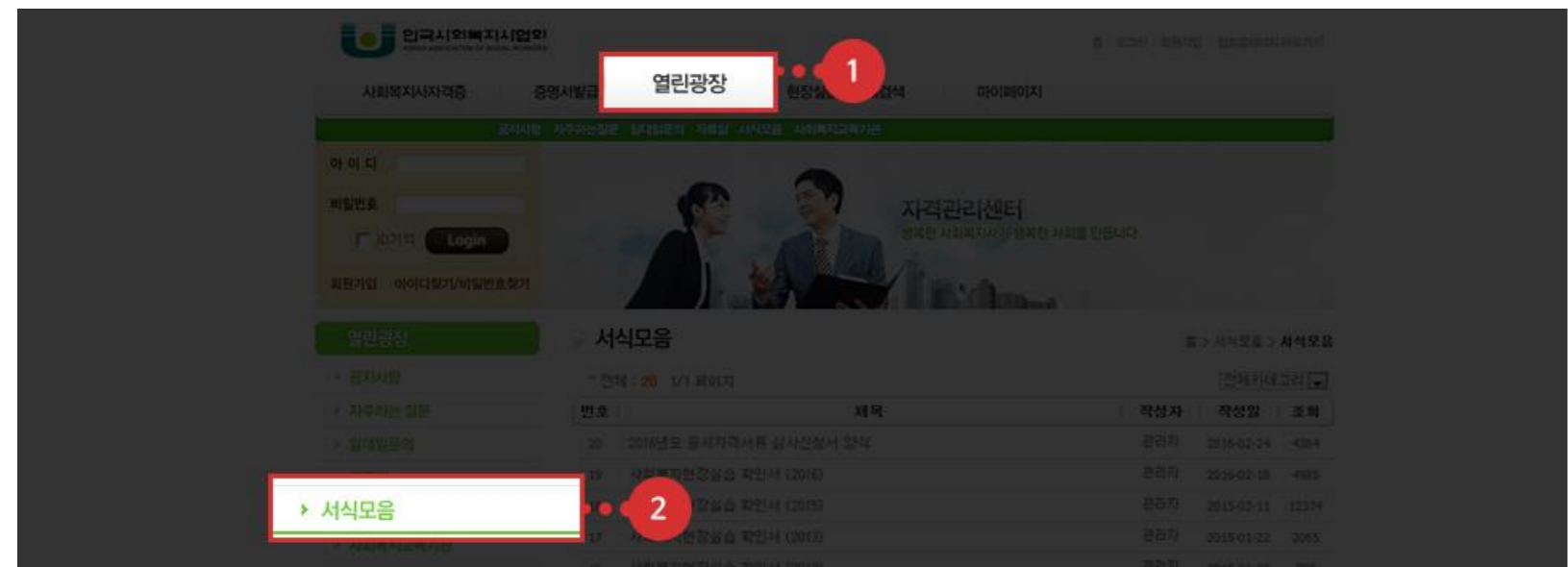
1

Member Login

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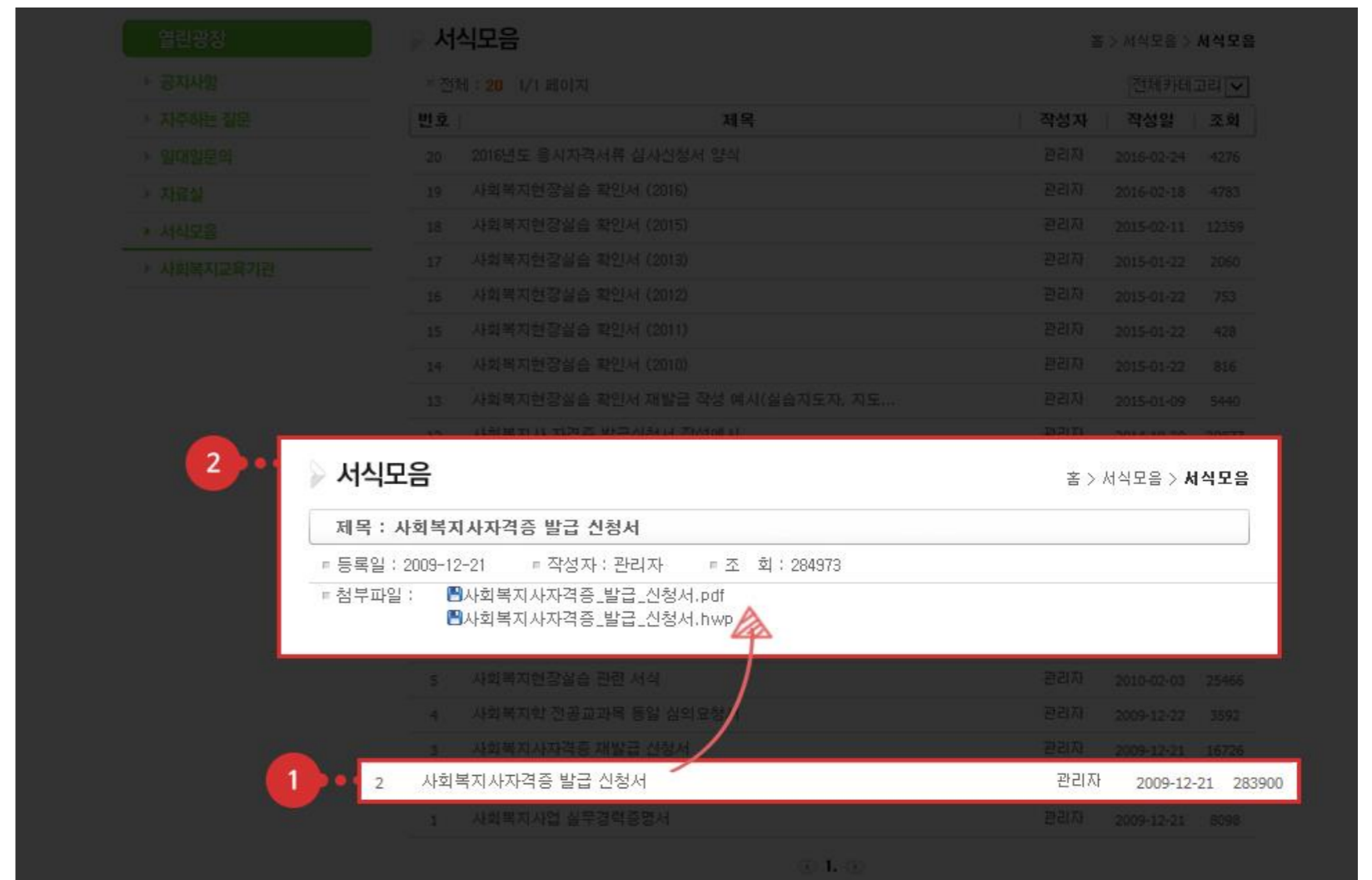
1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접속(<http://lic.welfare.net/Index.action>)

STEP 3-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하기 - 신청서 다운로드



1 열린광장 > 서식모음 클릭

STEP 3-2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하기 - 신청서 다운로드



- 1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클릭
-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파일 다운로드(pdf, hwp 中 택 1)

STEP 3-3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하기 - 신청서 작성

STEP 4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서류 준비 - 기타 구비서류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8. 12.>
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
 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			
1 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
	지택 주소	전화번호				
	직장명	휴대전화번호				
	직장 주소	전자우편주소				
		우편물 수령: []지택 []직장 []직접수령				
	신청등급	[]1급	[]2급			
2 최종학력	구분	기간	학교명			
	[]대학원(박사)	[. . .]부터				
	[]대학원(석사)	[. . .]까지				
	[]대학					
[]전문대학						
3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	교과목이수학교	[]대학원(석·박사)	[]대학	[]전문대학	[]평가인정 학습과정	[]기타()
	필수 교과목	[]사회복지개론	[]사회복지법제와 실천	[]사회복지실천기술론		
		[]사회복지실천론	[]사회복지정책론	[]사회복지조사론		
		[]사회복지행정론	[]사회복지현장실습	[]인간행동과 사회환경		
		[]지역사회복지론				
	선택 교과목	[]가족복지론	[]가족상담 및 가족치료	[]교정복지론		
		[]국제사회복지론	[]노인복지론	[]복지국가론		
		[]빈곤론	[]사례관리론	[]사회문제론		
		[]사회보장론	[]사회복지역사	[]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		
		[]사회복지와 인권	[]사회복지윤리와 철학	[]사회복지자료분석론		
[]사회복지지도감독론		[]산업복지론	[]아동복지론			
[]여성복지론		[]의료사회복지론	[]자원봉사론			
[]장애인복지론		[]정신건강론	[]정신건강사회복지론			
[]청소년복지론	[]프로그램 개발과 평가	[]학교사회복지론				
사회복지현장실습	기간	실습기관	기관실습 지도자	실습세미나 교수		
	[. . .]부터					
	[. . .]까지					

1. 본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(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)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. (확인 []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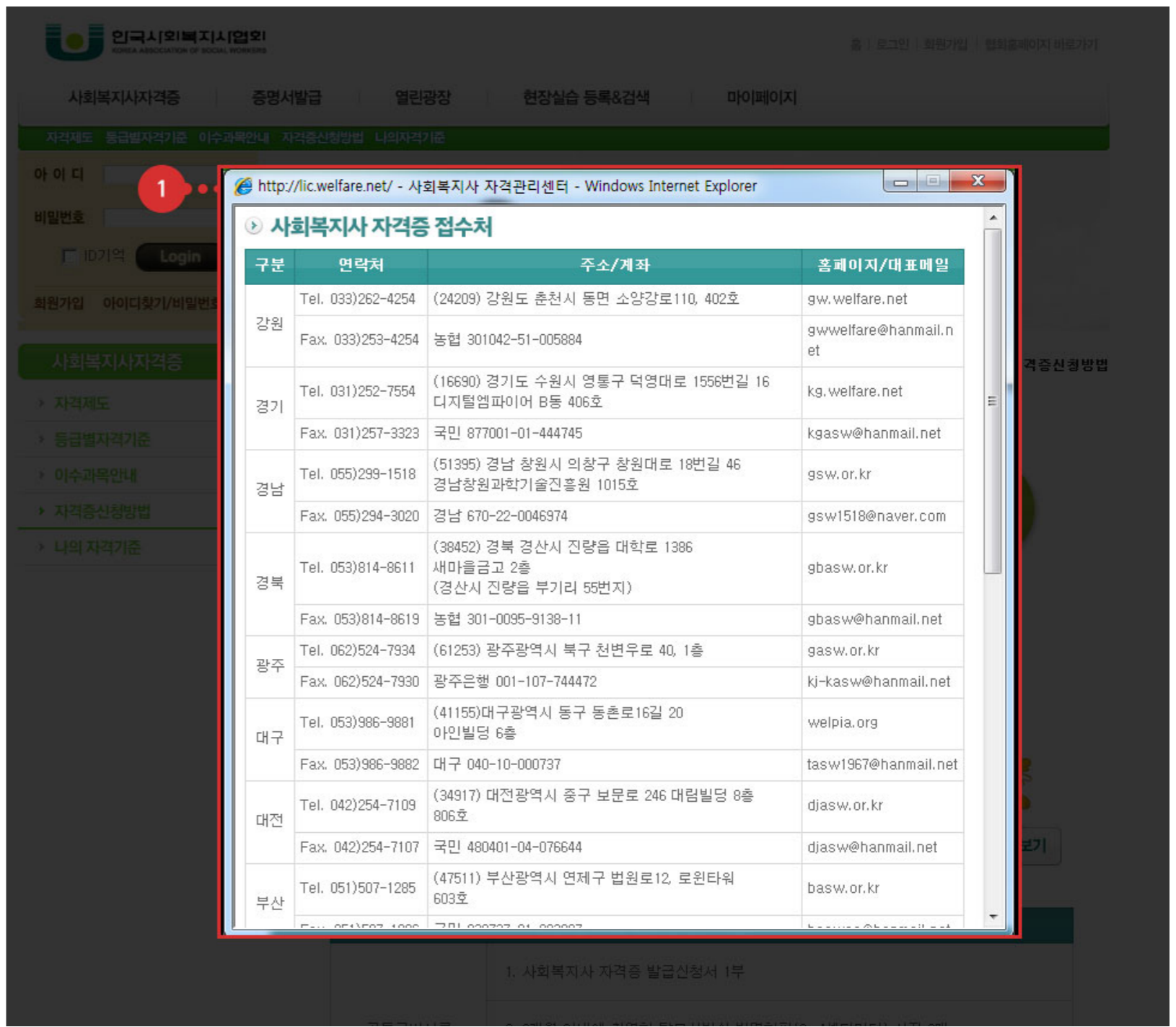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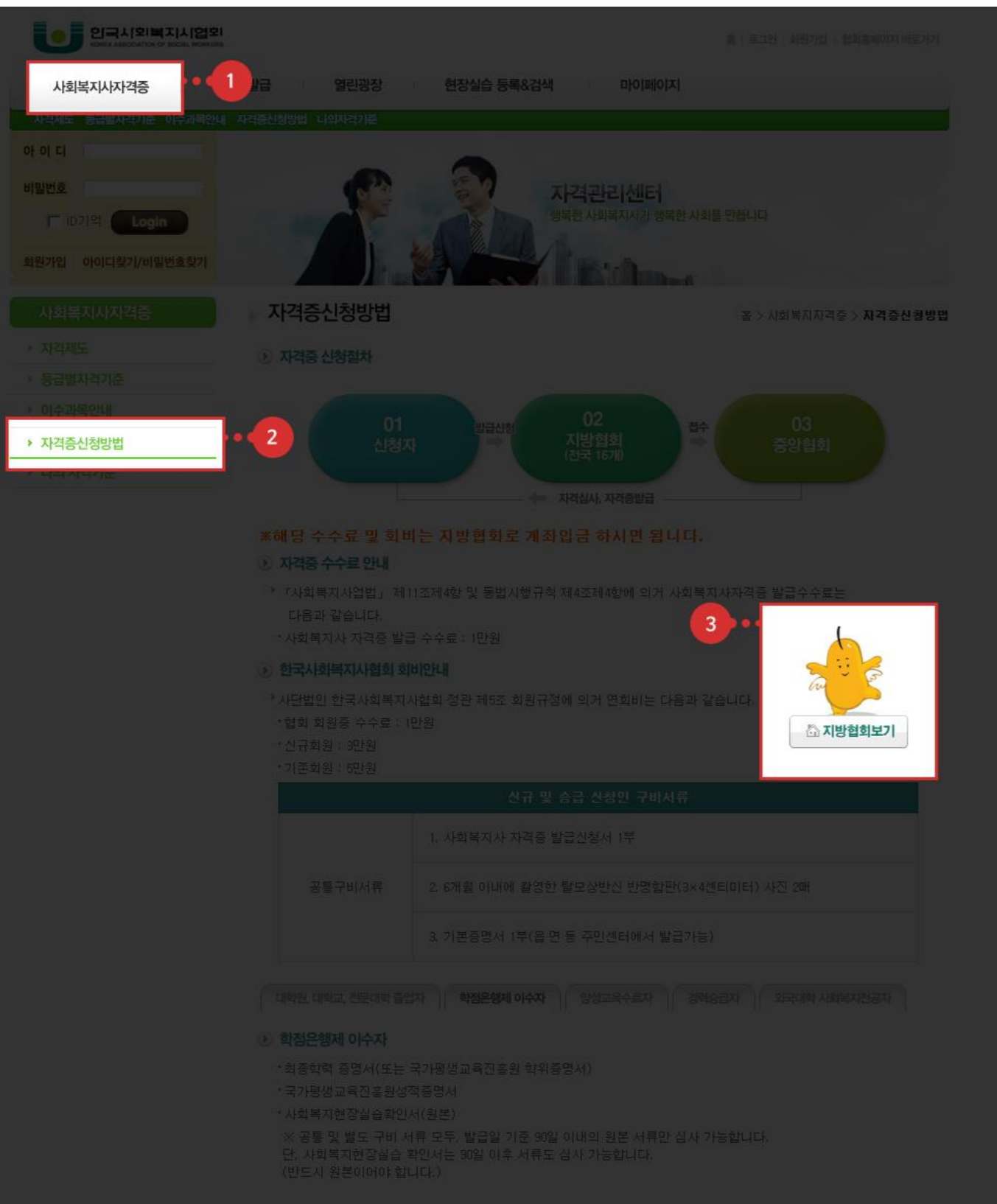
<결격사유>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 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 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.
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- 1 1, 2, 3 항목 작성
- 2 2항목 [최종학력] 작성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"국가평생교육진흥원"으로 기재
- 3 3항목 [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] -> [교과목이수학교], 배움 수강생인 경우 "평가인정학습과정" 체크

- 1 사회복지사자격증 > 자격증신청방법 > 페이지 하단 구비서류 확인(해당되는 항목 확인!)
- 2 졸업증명서 -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
(대학졸업증명서는 각 대학에서 발급 가능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)
- 3 실습서류 -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(원본)
- 4 기타 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

STEP 5-1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서류 발송 - 지방협회 확인

STEP 5-2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서류 발송 - 등기우편 발송



- 1 사회복지사 자격증 > 자격증 신청방법 클릭
- 2 지방협회보기 클릭

- 1 해당하는 지방 협회 확인
- 2 자격증 발급 서류 등기우편 발송
- 3 해당 협회 계좌로 수수료 납부 - 1만원

※ 서류 제출 약 15일 후,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등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